

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이 세 열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
규정인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(19.12.10)에
따라 이를 상위법령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
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